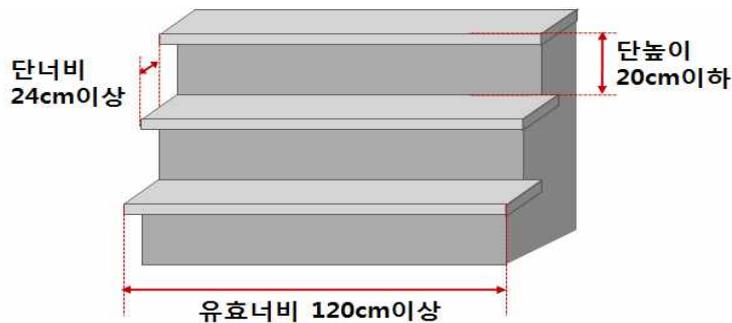


1 설치단계

□ 난간의 높이는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120c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.

○ 옥외계단은 유효폭 90cm 이상, 단높이 18cm 이하, 단너비 24cm 이상



○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20cm 이상

□ 실내계단의 난간높이는 90c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.

* 「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」에서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공용복도 난간의 경우 120c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

□ 난간의 형태는 가급적 세로형태의 난간살로 그 간격은 10c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합니다.

* 옥상 난간의 경우, 「실내건축의 구조·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」을 준용하여 ‘어린이가 밟고 올라갈 위험이 적은 형태의 난간살로 규정

□ 출입문 개폐방향은 건물 외부로 열리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.

○ 건물 내부로 개폐될 경우 화재발생시 옥상 또는 외부로의 대피가 지연될 수 있음

2 운영단계

- 난간 주변에 '적재물'을 비치하거나 '포토존' 조성, 난간이나 옥상 돌출물을 의자 등받이 등 인테리어로 활용하시면 안됩니다.
 - 난간의 실제 유효높이가 낮아져 추락사고의 위험이 높음

- 소화기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* 「소방시설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소화기는 내용연수(10년) 이내 충압상태가 양호한 제품 비치

- '주의·경고표시'를 충분히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난간에 '기대지마시오', '어린이가 난간에 매달리지 않도록 하시오' 등의 주의·경고 표시를 충분히 부착하여 사전 안전사고 예방
 - 기타 소화기 위치 등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표시를 부착하여 비상시 대처

- 외부 옥상출입로 잠금장치 설치, 옥상내 CCTV 설치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불특정 다수의 출입을 통제하여 안전사고 발생 예방